

# 2021년 제 2차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안건: 법인 정관 개정

제2호 안건: 법인 운영규정 개정

제3호 안건: 법인 감사선임

2021. 9. 15.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 1. 회의개요

- 1) 통지일: 2021년 9월 8일(수)
- 2) 일 시: 2021년 9월 15일(수) 14시
- 3) 장 소: 법인사무국 및 비대면온라인 대화방
- 4) 진행방식: (온라인) 카카오톡 대화방
- 5) 참석인원: 권호석, 우순화, 장은주, 이한길, 이현지
- 6) 회의안건: ①정관 변경(안)  
②운영규정 개정(안)  
③법인감사 선임

## 2. 회의 내용

사회: 권호석 이사장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이 재적이사 7명 중 5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2021년 제 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2) 인사말씀

의장은 참석한 이사 전원의 노고를 치하하다.

### 3)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권호석 이사장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다.

법인이 준용하는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정됨에 따른 적용범위나 세부 내용에 따른 변화를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의결을 주문하다. (\*아래 : 주요변경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전(2020年 1月)	개정 후(2021年 10月) 정관(안)
지적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거나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직업재활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	<p><b>제4조 (사업의 종류)</b></p> <p>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 style="margin-left: 2em;"><u>1.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u></p>	<p><b>제4조 (사업의 종류)</b></p> <p>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 style="margin-left: 2em;"><u>1.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u></p>
지적	<p><b>제6조 (자산의 관리)</b></p> <p>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u>1월 말까지</u>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6조 (자산의 관리)</b></p> <p>③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u>3월 31일</u>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지적	<p><b>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b></p> <p>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u>1개월</u>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b></p> <p>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u>5일</u>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지적	<p><b>제27조 (의결사항)</b></p> <p>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li> <li>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li> <li>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b>제27조 (이사회의 기능)</b></p> <p>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u>임월 임면</u>에 관한 사항</li> <li>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지적	<p><b>제28조 (이사회의 소집 등)</b></p> <p>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u>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u>이 있을 때 와 <u>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u>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④ 대표이사는 <u>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u>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u>14일 이내에</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b>제28조 (이사회의 소집 등)</b></p> <p>① 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아래 2항의 소집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p> <p>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u>20일 이내에</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이사의 <u>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u></li> <li>2.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u></li> </ol>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정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적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③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제10조의 5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및 법인소식지에 실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공고의 방법)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회의일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기타 보완	제9조, 제 12조, 17조, 38조 <u>「별첨1」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u>	

이에 이 한길이사의 동의와 우 순화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정관 변경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제2호 의안: 법인 운영규정 개정의건

권호석 이사장이 법인 운영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하다. 조직기구에서 2019년 폐지된 대구워너스 관련 문구(조직기구표 포함)를 삭제하고 조직인사편의 보수규정 부칙에서 상임대표이사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과장 2호봉의 기본급지급”을 “정액 20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의결을 주문하다.

이 현지이사의 동의와 장 은주 이사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운영규정 변경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제3호 의안: 법인 감사 선임(안) 의결의 건

권호석 이사장이 「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거 본 법인의 감사 남시원, 류규태의 임기 만료(2년)가 도래함에 따라 다음 감사의 중임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다.

- 다음 -

중임 감사 인적사항

- 1) 남시원(560406-1\*\*\*\*\*) : 헬싱키대 경영학석사 졸업
- 2) 류규태(560307-1\*\*\*\*\*) : KAIST 경영학 석사 졸업

이 한길이사의 동의와 우 순화 이사 재정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감사 중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5) 폐회선언

안건 심의가 완료되어 이 한길이사의 동의와 우 순화 이사 재정하여 이사장이 폐회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권호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15:00에 산회하다.

위의 의결사항을 더욱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낭독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에 날인하다.

기록: 김규성 간사(시설장)

- 참석임원 전원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2021년 9월 15일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대표권 있는)이사

권 호 석



이사

이 한 길



이사

우 순 화



이사

이 현 지



이사

장 은 주

